

1. 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초하여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적, 신체적, 의료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유지 및 증진에 주력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복지실천을 통해 대상자의 가족이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함께 도모한다.

◎ 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입소자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여가활동, 치매예방 및 관리 활동으로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물리(작업)치료 및 기능회복훈련을 통해 잔존기능을 개선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의 악화방지와 통증완화 등 건강유지에 힘쓴다.
- 입소자의 개별 욕구사정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신체, 인지기능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생활의 만족감을 높인다.
- 시설의 실내 환경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가정과 같은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입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한다.
- 부양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부담감 감소를 통하여 입소자의 편안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된다.
-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참여를 촉진하여 경노효친사상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사회복지실천을 꾀한다.

요 양 원 현 황

2. 일반현황

○ 장기요양기관 정보

장기요양기관명	현대노블카운티요양원	장기요양 기관 기호	1-4111000862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일자	2021년 7월 30일
전화번호	031) 206-2008	FAX 번호	031) 206-2003
홈페이지	현대노블카운티	주소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04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소유현황	자가

○ 시설현황

침 실 (생 활 실)				특별 침실	원장실	당직 실	사무 실	의료 및 간 호사실	요양 보호사 실	물리치 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조 리실	세탁실 (건조장)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1	1	1	2	1	3	1	4	1	3	5	3
	11	3	13												

○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구분	총원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	(계약) 의사
인원	55명	1	1	2	4	36	1(1)	1/4	1/1	2
보유 자격		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위탁	내과/치과 (의사면허증)

[주·야간, 평·휴일 직원인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등)에 의거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야간에는 야간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② 장기요양 기관의 특성상 평·휴일에 구분 없이 근무 상황표에 따라 24시간 운영합니다.

○ 시설급여 비용

급여 비용	세부 내용	산출 근거	금액
음식 재료비	식비 / 간식비	(식비)4,500원×3회 (간식1일2회)2,000원	일 15,5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 2인실 / 3인실	1인:20,000 2인:10,000 3인:5,000 (1일기준)	
경관영양유동식	처방 및 진료에 따름	실비	실비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30일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일당 비용	93,070원	86,340원	81,540원
비급여(식재료비+간식비)	465,000원	465,000원	465,000원
본인부담금 (8%)	688,368원	672,216원	660,696원
본인부담금 (12%)	800,052원	775,824원	758,544원
본인부담금 (20%)	1,023,420원	983,040원	954,240원

○ 시설의 규모,설비

시설의 규모	시설의 대지면적: 918 m ² , 시설의 연면적: 2,146.40m ²
시설의 설비	- 소화설비: 소화기구, 스프링쿨러 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개폐장치, 자동배연장치

운영 규정의 개요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가.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 간의 이의가 없을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합니다.
(단,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 계약만료 전에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보호자는 입소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지키며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가. 입소(이용자는 지켜야 할 제반 규칙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나.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장기출장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시설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훼손했을 때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합니다.

3. 입소(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퇴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나.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이 있는 경우

다. 입소비용(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라. 기타 운영자가 요양원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소를 명하는 경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본 기관은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다용도로 사용 등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중환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의거 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기타정보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요양 급여제공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지사 ☎ 031) 230-9251(9263)